

Q0	2024년 '임신·출산 진료비 다태아 추가지급'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0	○ (시행일) 2024. 1. 1.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168 316 331 343">구분</th> <th data-bbox="331 316 1001 343">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68 343 331 494">추가지급 신청대상</td> <td data-bbox="331 343 1001 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신부</li> <li>※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li> <li>※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li> <li>※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추가지급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신부</li> <li>※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li> <li>※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li> <li>※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li> </ul>
	구분	내용			
	추가지급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신부</li> <li>※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li> <li>※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li> <li>※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li> </ul>			
	추가지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태아 140만원 기본 지급</li> <li>▪ 추가지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태아: 60만 원 추가</li> <li>- 3태아: 160만 원 추가</li> <li>- 4태아: 260만 원 추가(5태아 이상 태아 당 100만 원 추가)</li> </ul> </li> </ul>			
추가지급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 지사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추가 지급 신청서'와 증빙 서류 첨부하여 신청(방문·우편·팩스)</li> <li>※ 카드사 신청 불가</li> </ul>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or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출력 가능</li> </ul> </li> <li>▪ 추가 제출서류(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임신주수 20주 이상 유지 증임을 확인하여 기재)</li> </ul> </li> <li>- '출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증명서(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함께 제출)</li> </ul> </li> </ul> </li> <li>※ 바우처 최초 신청과 동시에 추가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도 함께 제출</li> </ul> <p>※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과 별도로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 필수</p> <p>* 최초 신청 시 : 140만 원, 추가 지급 신청 시 : 60만 원(2태아 기준) 지급</p> <p>※ 다태아 추가지급은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온라인 임신정보 등록 불가</p> <p>※ 본인이 신청서 및 추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p> <p>※ 다태아 신청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신청서 및 추가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서명 누락 등) 반려될 수 있음</p>				

Q1	2태아 임신을 하여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추가지급 신청만 하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p>○ 2태아 기준 200만 원을 지급받으려면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다태아 임신 사실을 확인 받아 공단에 지급 신청을 한 다음, 임신주수 20주가 지난 후에 별도로 추가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p> <p>* 최초 지급 신청 시: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급</p> <p>ex) 2024.1.1. : 다태아 임신사실 확인        2024.1.2.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 140만 원 지급        2024.5.1. : 2태아 임신 20주 이상 유지 중 확인        2024.5.2.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급 신청 → 60만 원 지급</p> <p>단, 임신주수 20주 이 후 최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p> <p>ex) 2024.5.1. : 다태아 임신사실 확인 및 임신20주 이상 유지 중        2024.5.2.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및 다태아 추가지급 동시 신청</p> <p>※ 동시 신청 시 제출서류</p> <p>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p> <p>* 온라인으로 등록된 임신정보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p> <p>②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p> <p>③ 추가지급 신청 증빙서류</p>
Q2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2	<p>○ 임신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p> <p>○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p>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ex)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li> <li>-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품은 사용 제한</li> </ul>
Q3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로 건강보조식품 구입이 가능한가요?
A3	<p>○ 불가합니다.</p> <p>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약국에서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약처에서 인체의 안전성을 입증한 약품</li> </ul> <p>※ 의약품은 제외(의약품 안전나라 nedrug.mfds.co.kr에서 검색 확인)</p>

Q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은?
A4	○ <b>요양기관 직인 및 의사 서명(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b> 단, 요양기관 직인날인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서명 및 날인만으로도 가능하나 해당 요양기관에 임신 등의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 ※ 내용 누락 시 담당자가 반려 처리함.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도 동일 적용
Q5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5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은 <b>산부인과 전문의</b> 만 할 수 있으며 출산 확인의 경우는 조산사도 가능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및 확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의가 진료를 함으로써 산모와 태아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일반의까지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의료법 제77조 제3항 및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 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도 동일 적용
Q6	<b>바우처로 결제</b>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 국민행복카드 결제방법: <b>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b> ※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 시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거나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단말기 업체 문의)
Q7	임신부가 기존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유산)을 한 경우에는?
A7	○ 기존 바우처를 해지한 후 재임신(유산)으로 신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 전까지 기존 바우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 바우처로 신청 이후에는 기존 바우처 잔액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Q8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를 단순 착오 입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8	○ 바우처 등록 전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정보 삭제 후 재입력(수정 불가) ○ 바우처 등록 후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 제출 - 담당 의사의 임신·출산 확인 및 진단 변경 (1단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의 '②요양기관 확인'에 변경된 내용 기재 및 신고서 하단에 본인 서명 날인( <b>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본인 서명 날인 필수</b> ) (2단계) 공단 지사 방문 또는 <b>팩스 접수</b> , 전담 금융기관 방문 접수 - 요양기관의 단순 착오 입력 (1단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의 '②요양기관 확인'에 변경된 내용 기재, 신고서 하단에 변경 사유 및 신청인란에 <b>요양기관 담당자 성명 기재하고 서명 날인(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서명 날인 필수)</b> (2단계) 공단 지사 방문 또는 <b>팩스 접수</b> , 전담 금융기관 방문 접수
Q9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입력하나요?
A9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임신부의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b>【온라인 입력 경로】</b>  요양기관정보마당(<a href="https://medicare.nhis.or.kr">https://medicare.nhis.or.kr</a>) / 임신출산 / (건강)임신출산정보조회/입력 </div>

Q10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한 경우 국민행복카드만 발급받으면 지급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A10	<p>○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해준 후에 일반 금융카드 기능만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지급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b>바우처 신청</b>을 하여 대상자로 등록된 후 지급금 포인트가 생성되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 임신·출산 정보가 온라인으로 입력된 경우 임신부의 휴대전화로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문자가 발송되나 이는 바우처 등록 결과에 대한 안내는 아님</p>
Q11	피임시술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A11	<p>❖ <b>불가합니다.</b>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신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임 시술에 대한 바우처 사용은 불가합니다.</p>
Q12	유산(자궁 외 임신)도 임신과 동일하게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12	<p>○ <b>자궁 외 임신 진단 기준(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상)</b>      ※ ㉓ 또는 ㉔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기재 가능      ㉓ 정상적으로 임신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중 혈청 β- hCG가 500mIU/mL 이상으로 측정된 적이 있는 경우      ㉔ 초음파 또는 혈청 β- hCG로 임신이 확인된 후 임신 종결을 위한 수술(개복수술, 복강경수술, 소파수술 등) 또는 약물치료(Methotrexate 등)를 한 경우</p> <p>※ <b>임신으로 진단받기 전 임신초기의 자연유산의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음</b></p>

Q13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의 유산 또는 자궁 외 임신 진단일을 기재할 때 자궁 외 임신의 경우 일태아인지 다태아인지 구분이 안되는데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13	<p>○ 유산 또는 자궁 외 임신으로 일태아인지 다태아인지 여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상의 다태아 구분란에 <b>일태아로 기재</b>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Q14	임신 중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하고 이용권을 사용하던 중 유산하였습니다. 동일한 임신으로 유산 후 재신청할 수 있나요?
A14	<p>○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금액은 임신 1회당 지급되며, 임신 중 신청하여 지급 금액을 받은 경우 동일한 임신으로 유산 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p>
Q15	다태아로 신청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 받았으나 한 태아가 유산(사산)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15	<p>○ 다태아로 신청하였으나, 임신기간 중 한 태아가 유산(사산)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받은 지급금(140만원)을 이용하면 됩니다.</p>
Q16	임신중절수술 시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A16	<p>○ 인공임신중절수술에는 국민행복카드 지급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b>피임시술에도 사용 불가</b></p>
Q17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7	<p>○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로부터 <b>2년</b>까지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      ※ <b>사용 시작일 이전에 받은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b></p>

Q18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던 중 유산을 하고, 그 후 재임신을 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8	<p>○ 신청 절차</p> <p>① 기존 임신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해지 후 신규 바우처를 신청하면 됩니다. 바우처 해지 시 잔여 지급금은 소멸됩니다.(본인이 전화로 유선 신청)</p> <p>② 다음의 경우에는 직전 임신의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b>기존 임신에 대한 의사 소견서(진단서 등)</b>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li> <li>-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li> <li>- 기존 신청 건의 이용권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li> </ul> <p>※ 의사소견서를 통해 직전 임신과 재임신이 별개임을 확인 필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제출 서류】</b></p> <p>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p> <p>②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임신 또는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진단서 등)</p> </div>
Q19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잔액확인 은 어떻게 하나요?
A19	<p>○ 임신부가 지급금 사용액 및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p> <p>* 지원종료일 경과, 삭제대상, 해지대상은 잔액조회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금융인증서 등 로그인 필요)</li> <li>- 공단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조회</li> <li>-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li> <li>.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li> </ul> </li> <li>- 카드사 승인내역 알림서비스(SMS) 신청 시 단문메시지 전송</li> <li>-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정부서비스 / 정부서비스 신청 / 건강·의료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li> </ul>

Q20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신청만 하면 사용이 가능한가요?
A20	<p>○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카드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Q21	난임시술에도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A21	<p>○ 가능합니다.</p> <p>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 난임 진단자의 임신을 위한 인공수정, 관련 검사 등 난임시술 비용에도 잔여 바우처 사용 가능</p>
Q22	병원에서 진단서 등 서류 발급 비용 결제 시 바우처 사용가능한가요?
A22	<p>○ 불가합니다.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p>
Q23	신청일 기준 분만예정일 지난 경우에도 임신으로 임신확인정보 등록이 가능한가요?
A23	<p>○ 불가합니다. 분만예정일이 지난 후에는 출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p>
Q24	태아가 사산이 된 경우에는 바우처 신청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4	<p>○ 태아가 사산이 된 경우에는 `유산`으로 신청하면 됩니다.</p>

Q25	<b>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b>
A25	<p>○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b>'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b> 신청</p> <p>※ 신청 관련 문의: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p>
Q26	<b>진료비가 많아서 할부로 결제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b>
A26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은 할부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Q27	<b>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어 결제가 안 되는 경우는?</b>
A27	<p>❖ 요양기관기호는 동일하나 <b>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신고를 한 뒤, 해당 카드사에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시) 요양기관기호 동일 : 12345678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888-88-88888 ⇒ 999-99-99999</p> </div>

Q28	<b>바우처로 결제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b>
A28	<p>❖ 요양기관에서 바우처 결제가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b>바우처 등록여부, 사용기간 종료 여부 확인, 잔액확인</b>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바우처 신청이 완료되어야 사용 가능</li> <li>② <b>건강보험 자격 확인(급여정지, 자격상실 등)</b> → 공단 문의</li> <li>③ <b>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b> → 승인코드를 입력 후 재결제 *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 시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거나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 * 단말기 오류인 경우 단말기 업체에서 해결 가능</li> <li>④ <b>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b>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li> <li>⑤ <b>카드사에 가맹점 신고를 안 한 경우</b> → 카드사 문의</li> <li>⑥ <b>카드사에 등록된 요양기관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b> → 공단 문의</li> <li>⑦ <b>기타 사유</b> → 공단 문의</li> </ol>

**Q29 2022년도 제도 확대로 변경되는 내용이 뭐가 있나요?**

○ (시행시기) 2022. 1. 1.(바우처 신청일자 기준)

구분	확대 전( ~'21.12.31.까지)	확대 후 ('22.1.1.이후~ )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li> <li>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li> <li><b>2세 미만</b>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li> </ul>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임신 1회당 일태아 <b>100만원</b> / 다태아 <b>140만원</b>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li> <li>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li> <li><b>2세</b>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b>처방된</b> 약제·치료재료 구입</li> </ul>
사용 기간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에정일, 출산(유산·사산)일 부터 1년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에정일, 출산(유산·사산)일 부터 <b>2년</b>

⇒

※ 확대 적용대상  
: '22.1.1. 바우처 신청권한 유지자로 분만에정일(유산진단일·출산일)이 '21.1.1. 이후이며 '22.1.1. 이후 바우처를 신청하는 자

○ (유의사항)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ex)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품은 사용 제한**

**Q30 국외(해외)에서 출산 또는 유산한 경우 국외 병원의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면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국외(해외)에서 출산 또는 유산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A3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르면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조산사(출산 사실만 확인 가능)가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4호, 2021.11.10.)에 따르면 “임산부”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확인 등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일 또는 유산진단일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의료법」 제6조에 따른 조산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국외에서 출산 또는 유산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